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101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정점식・인요한・서천호

김정재 · 강대식 · 한기호

김종양 · 김미애 · 고동진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 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 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

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

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8조 의5).

나.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5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0분의 9"를 "100분의 9(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9"를 "100분의 9(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대한 과세특례)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	
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u>.</u>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u>100분의 9</u>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차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u>100분의 5[「후계농어업</u>
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
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u>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이</u>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u>100분의 3]</u>
2
<u>100분의 9(후계</u>
<u>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u>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u>100분의 5)</u>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일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u>100</u> 분의
5(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②
100분의
9(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u>100분의 5)</u>